별첨3

▢ 소유기관별 추진절차

시 건 물 / 학교	구건물 / 기타건물
신청서 접수 (자치구 → 시) ⇩ 대상지 선정심사(시) ⇩ 옥상녹화 협약 체결 (자치구, 사업소 ↔ 공공기관장) ⇩ 구조안전진단 시비부담시행(자치구, 사업소) ⇩ 설계용역 시비부담시행(자치구, 사업소) ⇩ 조경공사 시비부담시행(자치구, 사업소) ⇩ 준공보고 (자치구, 사업소 → 시)	신청서 접수 및 대상지 선정심사(시) (자치구 → 시) ⇩ 옥상녹화 협약체결 및 자부담금 예치 (자치구, 사업소 ↔ 공공기관장) ⇩ 구조안전진단 자체예산으로 시행(자치구, 사업소) ⇩ 설계용역 자체예산으로 시행(자치구, 사업소) ⇩ 사업비의 30~70% 이상 사업시행기관에 예치완료 확인 (공공기관 → 자치구, 사업소) ⇩ 조경공사 – 시비지원 비율기준에 따라 사업비 배정 (시 → 자치구, 사업소) ※ 기집행한 구조안전진단·설계용역비와 공사비 일부 자부담액의 합이 매칭 기준비율(30~70%) 이상 되도록 조치 ⇩ 준공 및 사업비 정산 (자치구, 사업소 → 시, 공공기관)